

## 33. 콜롬비아 (Colombia)

###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보험료율(가입자/사용자)	4% / 12%	4% / 12%	-
연금수급 개시 연령	남 62세, 여 57세	남 62세, 여 57세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300주	1,300주	-
노령연금 지급률(1,300주 기준)	평균소득의 55%~65%	평균소득의 55%~65%	-
일시금	가입자 평균보험료 × 보험료 납부주수	가입자 평균보험료 × 보험료 납부주수	-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6년(1965년 시행), 2003년(사회부조), 2005년(임의개인계좌(BEPS))
- **현행법** : 1993년(사회보장, 1994년 시행); 2005년[자산조사 개인계좌(BEPS), 2014년 시행]; 2007년(국가개발) ; 2007년(사회부조) ; 2012년(가족연금, 2014년 시행); 2013년[임의개인계좌(BEPS)] ; 2013년(자영자); 2016년(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개인계좌(의무 및 임의) 및 사회부조**
- ※ 가입자는 사회보험제도와 개인계좌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법적 퇴직연령 도달 전 매 5년~10년 마다 전환할 수 있음
- ※ 개인계좌제도(Beneficios Economicos Periodicos; BEPS)가 2014년에 도입되었고,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저소득자가 일반 연금제도에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가입자는 법정 퇴직연령 도달 시 평생 납부한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매칭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음

###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
- **당연적용** :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가사근로자, 단기근로자(연속 근무가 한 달 미만), 일용근로자; 다른 연금제도에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2003.1.29. 이후 고용된 국영석유회사(Ecopetrol) 근로자; 자영자
- **임의가입** :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콜롬비아 거주인, 해외거주 중인 콜롬비아 국민, 다른

연금제도에 적용된 외국인 근로자

- 특별제도 : 2003.1.30. 전에 고용된 Ecopetrol 근로자 및 공교육체계 내 교사 ; 군인 및 경찰

○ 임의개인계좌(BEPS) : 월 소득이 828,116 pesos 미만인 콜롬비아 국민

○ 사회부조 : 콜롬비아 빈곤층

## 4 재원조달

### ○ 가입자

-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사회부조
  - 적용소득의 4%
  - 적용소득이 월법정최저임금의 4배 ~ 16배인 경우 가입소득의 1%에서 월법정최저임금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소득의 2%까지 추가 납부하여 연금연대기금의 재원이 됨
  - \*연금연대기금(Pension Solidarity Fund; 처음 0.5%는 특정 자영자를 위한 보험료 보조의 재원이고 나머지는 BEPS 임의개인계좌 및 Colombia Mayor 사회연금을 보조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과 동일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25배
  - 가입자 및 사용자의 사회보험 총 보험료(16%) 중, 13%는 노령급여에, 0.8%는 장애급여에, 1.11%는 유족급여에, 1.09%는 행정수수료에 배정됨
  - 가입자 및 사용자의 개인계좌 총 보험료(16%) 중, 11.5%는 노령급여에, 3.0%는 장애 및 유족급여, 행정수수료에, 1.5%는 최저보장연금에 배정됨
  - 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단기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 납부)
- 임의개인계좌(BEPS) : 상기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사회부조 재원조달 참조
  - 임의 보험료 납부 또한 가능
  - 연 최저 임의 보험료는 5,000 pesos이며 연 최고 임의 보험료는 1,200,000 pesos임
  - 보험료 납부가 정기적일 필요는 없음

### ○ 자영자

- 사회보험
  - 신고 소득의 13%(노령); 0.8%(장애), 1.11%(유족), 1.09%(행정수수료)
  - 특정 취약계층 자영자는 필요 보험료의 70% ~ 95%를 500주 ~ 750주 동안 보조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과 동일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25배
- 의무개인계좌
  - 신고소득의 11.5%(노령), 1.5%(장애 및 유족), 1.5%(행정수수료), 1.5%(최저보장연금)
- 임의개인계좌(BEPS) : 임의 납부

- 연 최저 임의 보험료는 5,000 pesos이며 연 최고 임의 보험료는 1,200,000 pesos임
- 보험료 납부가 정기적일 필요는 없음

- 사회부조

- 법정 월 최저 임금의 4배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없음
- 법정 월 최저임금의 4배~15배 소득의 경우 적용소득의 1%
- 법정 월 최저임금의 20배 이상 소득의 경우 가입소득의 최대 2%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4배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20배
- 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단기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 납부)

## ○ 사용자

-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임금지급총액의 12%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과 동일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25배
- 가입자 및 사용자의 사회보험 총 보험료(16%) 중, 13%는 노령급여에, 0.8%는 장애급여에, 1.11%는 유족급여에, 1.09%는 행정수수료에 배정됨
- 가입자 및 사용자의 개인계좌 총 보험료(16%) 중, 11.5%는 노령급여에, 3.0%는 장애 및 유족급여, 행정수수료에, 1.5%는 최저보장연금에 배정됨
- 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단기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 납부)
- 사용자는 건강에 유해한 특정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 연금의 재원을 위하여 적용 임금 총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함
- 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단기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 납부)

- 임의개인계좌(BEPS) : 임의 납부

- 사회부조 : 없음

## ○ 정부

-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보험료 없음,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
- 임의개인계좌(BEPS) : 연금연대기금을 부분적으로 지원
  - 연금연대기금은 그 기금잔액의 20%를 BEPS 임의개인계좌에 지불하고, 또한 사회보험 또는 의무개인계좌제도에서 BEPS 임의개인계좌제도로 이전되는 기금의 20%를 지불함
- 사회부조 : 특정 자영자 및 Colombia Mayor 사회연금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부분적으로 자원 조달함

##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1,300주 이상인 62세 남성, 57세 여성
  - 노령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노령가족연금(사회보험, 자산조사)
  - 청구 전 5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며, 개개인은 사회보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합산한 보험료 납부기간이 1,300주 이상인 연금수급연령 부부(혼인 관계 또는 동거인)
  - 부부의 각 개인은 45세에 325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하며 SISBEN I 또는 II에 속해야 함
  - 부부 중 한 명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받고 다른 한 명은 의무개인계좌제도에 적용받는 경우, 의무개인계좌제도 가입자는 우선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해야(정상퇴직연령 보다 적어도 10년 이상 더 낮은 연령인 경우에 한해 인정됨)
  - \*SISBEN은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가구·개인을 규정하는 시스템임
  - 노령가족연금은 이혼 또는 별거 시 지급 중단됨
  - 노령가족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특별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특정 위험 직종 근무 700주를 포함하여 1,300주 이상인 55세
  - 수급연령 조건은, 위험 직종에서의 보험료 납부기간 700주를 초과하는 매 60주마다 1년씩 줄어들어서 최대 5년까지 감소
  - 특별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노령일시금(사회보험제도)
  - 남성 62세, 여성 57세에 도달했으나 사회보험 노령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료 최소 납부기간(1,300주)을 충족시킬 만큼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
  - 노령일시금은 해외지급 가능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개인계좌 적립금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150 주 이상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
  - 최저보장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1,150주 이상인 남성 62세, 여성 57세 도달자로 개인계좌 적립금이 법정 최저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지급
  - 법정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828,116 pesos)
  - 노령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노령가족연금(의무개인계좌)
  - 청구 전 5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며, 개개인은 의무개인계좌 노령연금을 받을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없으나 합산한 적립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만큼 충분한 연금수급연령

부부(혼인관계 또는 동거인)

- 부부 두 명 모두 동일한 연기금관리회사(SAFP)에 가입되어야 함
- 부부가 각각 다른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계좌 잔액이 적은 사람이 상대방의 연기금 관리회사로 전환해야 함
- 커플 중 한 명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받고 다른 한 명은 의무개인계좌제도에 적용받는 경우, 우선 사회보장제도 가입자가 의무개인계좌제도로 변경하고 상대방과 동일한 SAFP에 가입해야함(정상퇴직연령 보다 적어도 10년 이상 더 낮은 연령인 경우에 한해 인정됨)
- 노령가족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최저보장가족연금 : 합산한 보험료 납부기간이 1,150 주 이상이어야 함
- 법정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828,116 pesos)
- 노령일시금(의무개인계좌)
  - 남성 62세, 여성 57세에 도달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150주 미만이고, 이 납부기간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
- 노령급여(BEPS, 임의개인계좌)
  - 남성 62세, 여성 57세 도달하고, 모든 개인계좌의 합산 잔액이 법정 최저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1년 적립액이 노령연금을 위한 연간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 법정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828,116 pesos)
  - BEPS 계좌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사회보험 또는 의무개인계좌제도로 이전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됨
  - BEPS 급여는 노령사회연금과 합산될 수 있으나 최저보장연금과는 불가능
- 노령사회연금(콜롬비아 Mayor, 사회부조, 자산조사)
  - 정상퇴직연령보다 3세 이상 어리거나 더 많아야 하며, SISBEN I 또는 II에 해당하고 최종 10년간 콜롬비아에 거주한 자
  - \*SISBEN은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가구·개인을 규정하는 시스템임
  - 노령사회연금은 BEPS 임의개인계좌와 합산 가능

##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50% 이상 근로 능력 상실
  - 20세 미만인 경우, 장애발생 전 연도에 보험료 납부기간이 26주 이상
  - 20세 이상인 경우, 장애발생 전 3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이상
  - 이 외,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발생 전 3년 동안 25주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975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의료위원회가 3년마다 장애정도를 재심사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사회보험 또는 의무개인계좌의 장애연금을 위한 연령 및 장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의료위원회가 장애정도를 심사함
- 장애급여(BEPS, 임의개인계좌)

- 특정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기금 가입자
- 6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법정 일 최저임금의 12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사망 시점에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였거나 수급 자격이 있거나, 사망 직전 최종 3년간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이상인 경우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하였거나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유족 배우자 또는 동거인, 18세 미만 피부양 고아(학생인 경우 25세, 장애인 경우 연령 불문), 유족배우자나 수급 가능 고아가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 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 유족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유족일시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사망자가 노령이나 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유족 배우자가 사망자와 5년 미만 동거한 경우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하였거나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유족 배우자 또는 동거인, 18세 미만 피부양 고아(학생인 경우 25세, 장애인 경우 연령 불문), 유족배우자나 수급 가능 고아가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 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 유족일시금(BEPS, 임의개인계좌)
  - 기금 가입자가 정상퇴직연령 전에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
- 유족급여(BEPS, 임의개인계좌)
  - 사망인이 6회 이상 보험료 납부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법정 일 최저임금의 6배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그리고 BEPS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 법정 일 최저임금 : 27,604 pesos
- 장제비(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 사망시 장례비를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
- 장제비(BEPS, 임의개인계좌)
  - 사망인이 6회 이상 보험료 납부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법정 일 최저임금의 6배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그리고 BEPS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장례비를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
    - \* 법정 일 최저임금 : 27,604 pesos

## 6

###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5~65%(임금이 낮을수록 대체율 높아짐)에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소득의 1.5%씩 추가

- 노령연금 월 상한액은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80%
- 가입자 월평균소득은 최종 10년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 적용소득임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25배
- 최저 사회보험 노령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
- 지급주기 : 연 13회 지급, 단, 노령연금액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배 미만이고 2011년 1월 31일 전에 퇴직한 가입자인 경우, 14회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 노령가족연금(사회보험, 소득조사)
  - 법정 월 최저임금은 배우자들 또는 동거인들 간 균등 배분
- 특별연금(사회보험)
  - 사회보장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됨
  - 지급주기 : 연 13회 지급, 단, 노령연금액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배 미만이고 2011년 1월 31일 전에 퇴직한 가입자인 경우, 14회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보험료 부분에 보험료 납부 주(week)수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수령 대신에, 가입자는 노령일시금을 BEPS 임의개인계좌로 이전할 수 있음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가입자는 다음 세 가지의 선택권을 가짐 ; 정기적 인출, 연금 구입 또는 위 두 가지 방안의 조합을 활용
  - 최저보장연금 : 개인계좌잔액과 법정 최저연금액 재원을 위해 필요한 계좌잔액 간 차이를 지급
  - 법정 최저 연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
- 노령가족연금(의무개인계좌)
  - 의무개인계좌 노령연금은 배우자들 또는 동거인들 간 균등 배분
  - 최저보장가족연금 : 의무개인계좌 노령연금을 위한 최저보장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됨
  - 급여 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 노령일시금(의무개인계좌)
  - 계좌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수령 대신에, 기금 가입자는 계좌잔액을 BEPS 임의개인계좌로 이전할 수 있음
- 노령급여(BEPS, 임의개인계좌)
  - 계좌잔액에 20% 보조금을 가산하여 연금 지급; 사회보험 노령일시금 또는 의무개인계좌잔액이 BEPS 임의개인계좌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 금액의 추가 20% 보조금이 지급됨
  - 기금 가입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계좌 잔액만 지급됨
  -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85%를 상한으로 지급
  - 지급주기 : 매 2개월마다 지급

- 노령사회연금(Colombia Mayor, 사회부조, 자산조사)
  - 월 40,000~75,000 pesos 지급
  - 수급권자가 BEPS 임의개인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급여액 지급
  -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급여수준 개선을 위해 공동 자원 조달할 수 있음

##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장애 판정 정도가 66% 초과로 판정받은 경우,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4%에 8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2%씩 가산하되 최대 75%까지로 함
  - 장애 판정 정도가 50% 이상에서 66% 미만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45%에 5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1.5%씩 가산
  - 가입자 월평균소득은 장애 발생 전 지난 10년 동안의 가입자 월평균 적용소득임 (10년 미만일 경우, 총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25배
  -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
  - 지급주기 : 연 13회 지급, 단, 장애연금액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배 미만이고 2011년 1월 31일 전에 연금이 지급된 경우, 14회 지급
  - 급여 조정 : 급여는 소비자 물가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주당 평균 적용소득의 보험료 부분에 보험료 납부 주 수를 곱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일시금(의무개인계좌) : 개인계좌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가입자는 노령연금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음
- 장애급여(BEPS, 임의개인계좌)
  - 연 적립액 100,001~1,200,000 pesos까지 계좌잔액의 10~15배를 일시금으로 지급
  - 연 적립액 100,000까지는 최대 1,000,000 pesos 까지 지급

## ○ 유족급여

- 유족연금(공적, 사적부문)
  - 사망자가 수급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 또는 사망자 월 평균 소득의 45%에 50주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50주당 소득의 2%씩 가산한 금액 지급
  - 월평균소득은 사망 전 지난 10년 동안 사망자의 월평균 적용소득임 (10년 미만일 경우, 총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입자 사망 시점에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30세 이상이거나 사망인과의 관계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은 평생 지급;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30세 미만이고 사망자와의 관계에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20년 지급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25배
  - 합산된 최저 유족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
  - 월 최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 월 평균 소득의 75%



- 사망자가 노령가족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사망자 노령가족연금액 100%를 피부양 자녀가 없는 유족배우자에게 지급;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노령가족연금액은 유족 배우자의 노령가족연금의 변동 없이 유족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분할됨
- 지급주기 : 연 13회 지급, 단, 유족연금액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배 미만이고 2011년 1월 31일 전에 연금이 지급된 경우, 14회 지급
- 급여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최저 임금의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 유족일시금(사회보험)
  - 사망 시점에 사망자가 수급 자격이 있었던 노령일시금을 지급
- 유족일시금(의무개인계좌)
  - 계좌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BEPS, 임의개인계좌)
  - 연 적립액 100,001~1,200,000 pesos까지 계좌잔액의 10~15배를 일시금으로 지급
  - 연 적립액 100,000까지는 최대 1,000,000 pesos 까지 지급
- 유족일시금(BEPS, 임의개인계좌)
  - 계좌잔액에 발생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장제비(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사망자의 1개월분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이나 최종 월 소득을 장례 비용 지불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최저 장제비는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의 5배
  - 최대 장제비는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배
- 장제비(BEPS 임의개인계좌)
  - 법정 월 최저임금(828.116 pesos) 1.5배의 일시금을 장례비용으로 지급

## 7

### 관리운영기관

#### ○ 노동부(Ministry of Labor)

- <http://www.mintrabajo.gov.co>
- 전반적 감독

#### ○ 콜롬비아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intendence)

- 전반적인 재정 감독

#### ○ Colpensiones

- <https://www.colpensiones.gov.co>
- 사회보험 및 BEPS 제도를 국가적으로 운영

#### ○ 연금 및 퇴직기금 관리회사 Pension and Severance Pay Fund management company(SAFPCs)

- 개인계좌제도 운영

○ **Fiduagraria**

- <https://www.fiduagraria.gov.co>
- 사회부조제도 운영

○ **징수 통합플랫폼 관리(Administrator of the Integrated Platform for Payment of Contributions(PILA))**

- <https://www.minsalud.gov.co/proteccionsocial/Paginas/pila.aspx>
- 보험료 징수

<2019년 ISSA 자료>